

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대한치의학회장

(경유)

제목 법인 설립허가 승인 통보

1. 관련근거

- 가.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 법인 설립허가 신청(2016.12.1.)
- 나. 규제개혁법무담당관-16219(2016.12.29.)호 '제4회 비영리법인심의회 결과 통보'
- 다.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66, 46-1589(2017.4.21.)
- 라. 대한치의학회 치의학17-2(2017.5.12.)

2. 귀 학회에서 신청한 법인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불임과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승인하니, 민법 제49조 내지 5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내에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허가조건 >

-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
-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
-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

불임 1. 법인설립허가증 1부.

2. 정관허가서 및 정관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주무관

유정현

행정사무관

박상현

구강생활건강 2017. 5. 16.

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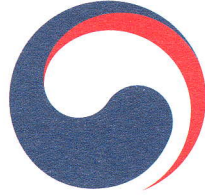
배경택

협조자

시행 구강생활건강과-3148 (2017. 5. 16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3 / <http://www.mohw.go.kr>
층 구강생활건강과

전화번호 044-202-2844 팩스번호 044-202-3939 / jeonghyunyu@korea.kr / 비공개(6)



제 429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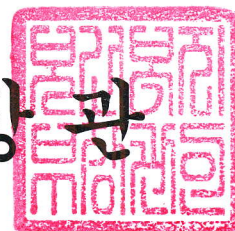
법인 설립 허가증

1. 법 인 명 :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
2.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회관
3. 대 표 자 :
 - 가. 성 명 : 이 종 호
 - 나. 생년월일 : 1957. 3. 18
 - 다.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, 70동 202호
4. 사업내용 : 치의학 교육 및 연구 발전,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교육 연구발전, 치의학 국제교류, 협회 학술활동 지원, 종합학술대회 및 분과학회 개최 및 운영, 치의학회지 발간 등
5. 허가조건 : 「민법」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법령과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17년 5월 16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



보건복지부 허가 제429-1호

정 관 허 가 서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
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
정관을 붙임과 같이 허가합니다.

2017. 5. 16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